

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20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·반영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07명으로 조정(안 제2조)

- ▶ 집행기관의 정원 : 596명(증 12명)
- ▶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1명(변동없음)

※ 정원승인현황 : 총 12명

- ▶ 보육관련업무 정원 승인 : 1명(7급)
- ▶ 토지관련업무 정원 승인 : 2명(7급 1명, 8급 1명)
- ▶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승인 : 9명(5급 1명, 7급 5명, 8급 3명)

※ 조례 개정문과 정원수 차이 사유

- 한시정원 기한만료(2005.12.31) : 본청 7급 △1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행정자치부 정원승인

(2005.12.07, 2006.01.23, 2006.01.25)

라. 입법예고 : 2006.01.26~2006.02.14(20일간), 제출의견 없음.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바. 기타 : 비용소요 추계서 별첨

평창군조례 제 호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596명”을 “607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585명”을 “59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직종 · 직급별		합 계	집행기관	의회사무과
총 계		607	596	11
정무직	소계	1	1	
	군수	1	1	
일반직	소계	475	469	6
	4급	4	4	
	5급	25	23	2
	6급	122	121	1
	7급	149	147	2
	8급	118	117	1
	9급	57	57	
연구직	소계	1	1	
	연구관			
	연구사	1	1	
지도직	소계	23	23	
	지도관	1	1	
	지도사	22	22	
별정직	소계	17	17	
	6급상당	16	16	
	7급상당	1	1	
기능직	소계	90	85	5
	기능6급	3	3	
	기능7급	8	7	1
	기능8급	15	14	1
	기능9급	30	29	1
	기능10급	34	32	2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 정   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596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85명</u></p> <p>2. (생   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07명</u>-----, -----.</p> <p>1.----- : <u>596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# 비용소요 추계서

## 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[별표 1]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[별표 1]

## 2. 정원의 변동 내역

- 보육관련업무 정원승인 ⇒ 증 1명(7급)
- 토지관련업무 정원승인 ⇒ 증 2명(7급 1명, 8급 1명)
-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 ⇒ 증 9명(5급 1명, 7급 5명, 8급 3명)

## 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출근거
총 계	561,203	
○ 인건비(100)	539,483	
- 기본급(01)	351,597	○ 본봉 5급 2,863,100원 × 1명 × 12월 = 34,357,200원 7급 2,276,800원 × 7명 × 12월 = 191,251,200원 8급 2,061,300원 × 4명 × 12월 = 98,942,400원 ○ 정근수당 162,275,400원 × 2/12 = 27,045,900원
- 수 당(02)	52,990	○ 초과근무수당 - 6,919원 × 12명 × 30시간 × 12월 = 29,890,080원 ○ 정액수당 . 가족수당 30,000원 × 12명 × 1.50 × 12월 = 6,480,000원 . 정근수당가산금 - 25년이상 130,000원 × 1명 × 12월 = 1,560,000원 - 10년이상-15년미만 60,000원 × 7명 × 12월 = 5,040,000원 - 5년이상-10년미만 50,000원 × 4명 × 12월 = 2,400,000원 . 대우공무원수당 - 7급 2,276,800원 × 7명 × 4.8% × 12월 = 9,180,050원

구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출근거
- 정액급식비(03)	18,720	130,000원 × 12명 × 12월 = 18,720,000원
- 교통보조비(04)	18,360	○ 5급 140,000원 × 1명 × 12월 = 1,680,000원 ○ 7급 130,000원 × 7명 × 12월 = 10,920,000원 ○ 8급 120,000원 × 4명 × 12월 = 5,760,000원
- 명절휴가비(05)	32,455	324,550,800원 × 1/12 × 120% = 32,455,080원
- 가계지원비(06)	54,092	324,550,800원 × 1/12 × 200% = 54,091,800원
- 연가보상비(07)	11,269	324,550,800원 × 1/12 × 1/24 × 10일 = 11,269,120원
○ 물건비(200)	21,720	
- 정원가산업무추진비	720	60,000원 × 12명 = 720,000원
- 직책급 업무추진비	1,200	100,000원 × 1명 × 12월 = 1,200,000원
- 직급보조비	19,800	○ 5급 250,000원 × 1명 × 12월 = 3,000,000원 ○ 7급 140,000원 × 7명 × 12월 = 11,760,000원 ○ 8급 105,000원 × 4명 × 12월 = 5,040,000원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~ 3. (생략)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(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.